



## 농무부

### 반괴롭힘(Anti-Harassment) 정책 강령

미국 농무부(USDA)는 모든 직원들이 성희롱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개별적인 가치를 권장하고 발전시키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USDA 는 반드시 불법적인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USDA 에는 괴롭히는 행동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예방하고 척결해나가야 하는 괴롭힘이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원치 않은, 모욕적인 행위 또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연령 (40 세 이상), 성별, 성적 취향, 장애, 성 정체성, 정치적 신념, 결혼 여부, 가족/부모의 지위, 유전적인 정보, 이전의 평등한 고용기회(EEO) 관련 행위에 대한 보복 (양갈음)을 근거로 특정 개인에게 적대감이나 혐오감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또는 모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업무 실적에 지장을 주며, 그 외 고용 계약의 변경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금지된 행위에는 괴롭힘, 모욕, 부정적인 고정관념, 협박, 위협, 서면 또는 구두로 하는 무례한 말, 개인 또는 보호받는 그룹을 모욕하는 그래픽 자료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금지된 괴롭힘의 한 유형은 성적인 괴롭힘입니다. 그것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 성적인 호의의 요구, 또는 그밖에 그러한 행동에 대한 복종이 특정 개인 고용의 조건이 되고 그에 대한 거부가 고용 관련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그러한 행동의 목적이 개인의 업무실적을 불합리하게 방해하는 것이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모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곳에서 본질적으로 성적인 성질을 갖는 언어적 육체적인 괴롭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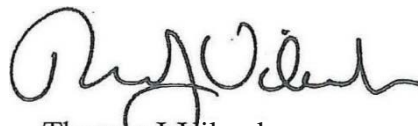
USDA 에서 우리의 정책은 성적인 괴롭힘을 비롯해서 어떤 형태의 괴롭힘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을 모든 USDA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것이며, 모든 관리자, 감독관들의 책임 아래 괴롭힘이 없는 근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관리자와 감독관들은 불법적인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 현장을 감독할 것입니다. 관리자와 감독관은 어떤 종류이든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이같은 정책을 집행하는 적절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USDA 는 직원들이 주저없이 어떤 괴롭힘 사건이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USDA 는 괴롭힘 사건을 공정하게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원들은 모두 제 1 선의 감독관이나 제 2 선의 감독관, 괴롭힘 당사자의 감독관 또는 해당 관청의 반괴롭힘 정책에서 명시한 사무소나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성적인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책무이며, 이와 동일한 경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보호받는 계층에 대한 괴롭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원은 EEO 고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감독관은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고발 신고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직원이 어떤 형식으로든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보복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괴롭힘과 보복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심각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며, 가능한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입니다. 성적인 괴롭힘이나 위에서 언급한 근거에 따른 괴롭힘 또는 보복 행위에 대한 EEO 고발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USDA 직원들은 반드시 괴롭힘 또는 보복 행위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45 역일 이내에 EEO.상담 전문가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EEO 고발 신고 절차에 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http://www.ascr.usda.gov/complaint\\_filing\\_emp.html](http://www.ascr.usda.gov/complaint_filing_emp.html)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보복을 가한 직원은 징계조치 또는 최고 해고를 포함하는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게 됩니다.

저는 USDA 의 모든 직원들이 전적으로 관여하고,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괴롭힘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Thomas J. Vilsack

장관